

사.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30조의2 신설)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그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억원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2)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뜻을 미리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 3)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4)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함.

아.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 세분화(법 제31조 및 제32조)

- 1)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 및 상습적인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단순 불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법률 제9437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

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개정이유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하며,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법 제14조)

-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법 제66조의2)

-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법 제111조 및 제113조)

-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기관(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 2)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9438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